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51호 2022. 1. 26.(수)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7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계획과(☎ 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II. 위 치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 2,093,078.8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37호 (2006.12.18) |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 유별 |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43 | 17,854 | 393,018.4 | 10 | 6,115 | 180,769.7 | 32 | 11,079 | 190,170.7 | 2 | 660 | 22,078.0 |
| | 변경 | 43 | 17,854 | 393,655.4 | 10 | 6,115 | 180,769.7 | 32 | 11,079 | 190,533.2 | 2 | 660 | 22,352.5 |
| 광로 | 기정 | 1 | 487 | 19,955.8 | - | - | - | - | - | - | 1 | 487 | 19,955.8 |
| | 변경 | 1 | 487 | 20,230.3 | | | | | | | 1 | 487 | 20,230.3 |
| 대로 | 기정 | 8 | 5,292 | 180,391.5 | 4 | 3,101 | 113,094.9 | 4 | 2,191 | 67,296.6 | - | - | - |
| | 변경 | 8 | 5,292 | 180,555.9 | 4 | 3,101 | 113,094.9 | 4 | 2,191 | 67,461.0 | | | |
| 중로 | 기정 | 30 | 11,508 | 187,906.1 | 5 | 2,901 | 66,541.8 | 25 | 8,434 | 119,242.1 | 1 | 173 | 2,122.2 |
| | 변경 | 30 | 11,508 | 188,104.2 | 5 | 2,901 | 66,541.8 | 25 | 8,434 | 119,440.2 | 1 | 173 | 2,122.2 |
| 소로 | 기정 | 4 | 567 | 4,765.0 | 1 | 113 | 1,133.0 | 3 | 454 | 3,632.0 | - | -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광로 | 3 | 3 | 40 (40~46) | 주간선 도로 | 1,761 (487) | 원창동 대1-16 | 원창동 대1-17 | 일반도로 | - | 인고2006-158 (06.9.11.) | ()는 구역내 |
| 변경 | 광로 | 3 | 3 | 40 (40~46) | 주간선 도로 | 1,761 (487) | 원창동 대1-16 | 원창동 대1-17 | 일반도로 | - | 인고2006-158 (06.9.11.) | 가감속차로계획 ()는 구역내 |
| 기정 | 대로 | 2 | 37 | 30 | 국지도로 | 1,085 (764) | 대1-7 | 원창동 395-7 | 일반도로 | - | | ()는 구역내 |
| 변경 | 대로 | 2 | 37 | 30 | 국지도로 | 1,085 (764) | 대1-7 | 원창동 395-7 | 일반도로 | - | | 감속차로계획 ()는 구역내 |
| 기정 | 중로 | 2 | 11 | 15 | 국지도로 | 550 | 광3-3 | 대2-37 | 일반도로 | - | 인고 2012-5 (2012.01.16.) | |
| 변경 | 중로 | 2 | 11 | 15 | 국지도로 | 550 | 광3-3 | 대2-37 | 일반도로 | - | 인고 2012-5 (2012.01.16.) | 가감속차로계획 |
| 기정 | 중로 | 2 | 12 | 15 | 국지도로 | 550 | 광3-3 | 대2-37 | 일반도로 | - | 인고 2012-5 (2012.01.16.) | |
| 변경 | 중로 | 2 | 12 | 15 | 국지도로 | 550 | 광3-3 | 대2-37 | 일반도로 | - | 인고 2012-5 (2012.01.16.) | 우회전차로계획 |

②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공업용지(변경)

|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위 치 | 필 지 | 비 고 |
|----|----------|----------|----------|-----|----------|--|
| | | | | | 면 적(㎡) | |
| 기정 | II | II-4 | 99,497 | 1 | 16,563 | 주1,2) 필지 분할 가능 |
| | | | | 2 | 16,626 | |
| | | | | 3 | 16,579 | |
| | | | | 4 | 16,584 | |
| | | | | 5 | 16,572 | |
| | | | | 6 | 16,573 | |
| 변경 | II | II-4 | 98,905.4 | 1 | 16,313.7 | 주1,2) 필지 분할 가능 ※ 도로개설 및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 | | 2 | 16,626.0 | |
| | | | | 3 | 16,413.8 | |
| | | | | 4 | 16,406.0 | |
| | | | | 5 | 16,572.5 | |
| | | | | 6 | 16,573.4 | |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다)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한함) (변경없음)

IV.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2-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 26.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청라호반베르디움3차20BL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76번길 14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44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2년 1월 26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2년 4월 27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